

# 세츠(CCETS) 상품권 이용약관

제정: 2025.07.09.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세츠 상품권(이하 "세츠"라 한다)을 그 소지자(이하 "회원"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회원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한 사용처(이하, "사용처"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 제 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은 세츠는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1. 금액 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제 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세츠 발행 시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 제 4조 (세츠의 사용)

- ① 회원이 세츠 상품권면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사용처는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 ② 회원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세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 또는 특정 물품 등에 대하여 세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회원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 ④ 세츠는 자연드림 장보기 온라인몰(www.icoop.or.kr)에서 수매선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등 제반 조건에 대해서는 수매선수금의 관련 약관 규정에 따른다.
- ⑤ 세츠 뒷면의 스크래치 부위가 개봉되어 일련번호가 노출된 상품권은 이미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수매선수금으로 전환이 완료된 상품권으로 간주되며, 오프라인 사용처에서 물품 등의 구입시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⑥ 회원이 발행자 또는 사용처에서 증정용 상품권(상품권면에 '증정용'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공된 재화 등의 가격이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일 경우에는 증정용 상품권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한다.

**제5조 (세츠의 훼손)**

- ①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세츠가 훼손되어 회원이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한다.
- ② 세츠가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사용처는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등이 불명확한 경우 회원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세츠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세츠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또는 세츠를 위법, 불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발행자 또는 사용처는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 6조 (소멸시효)**

세츠를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원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7조 (세츠의 잔액반환)**

- ① 세츠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회원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사용처는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 8조 (지급보증 등)**

세츠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 '지급보증 등'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9조 (발행자의 책임)**

세츠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 제 10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또는 사용처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 제 11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과 발행자 또는 사용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